

의안번호	제 501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6월 일 (제 290 회)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0년 5월 2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01
----------	-----

제출연월일 : 2010년 5월 2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및 조직·제도 변경에 따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정비 추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9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조직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일괄개정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보 및 인터넷”을 “도보 또는 인터넷”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제5조(「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자동차폐차업시설 및 작업기준 제2호 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한다.
- ② 별지 제2호서식 중 “위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자동차관리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를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을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합니다”로 한다.

제7조(「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6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7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 ② 제9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6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한한다.

제8조(「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국·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을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4조제2항제3호 중 “실·국·본부장(소방본부장 포함)”을 “실·국장(소방본부장 포함)”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기반보호총괄관”을 “민방위·민원개선과장”으로 한다.
- ② 제8조제2항 중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 ③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④ 제26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⑥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각각 한다.
- ⑦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25조제5항 중 “여성정책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
- ② 제37조제1항 중 “여성정책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

제11조(「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7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 ② 제8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보건의약담당”을 “보건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3조(「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보건의약담당”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제14조(「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 ②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 제3조제3항 중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 ④ 제4조제2호 중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8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환경기획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제9조 중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6조(「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로 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1호”를 “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터미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로, “같은 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③ 제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를 “(「병역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④ 제9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⑤ 별표 유의사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로 하고, 유의사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으로, “50만원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⑥ 별지 제1호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⑦ 별지 제2호서식 중 (갑)과 (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로 한다.

제17조(「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1조제2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② 제15조제2항 중 “「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제35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52조”를 “「수도법」 제75조, 「하수도법」 제63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56조”로 한다.

제18조(「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9조(「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징수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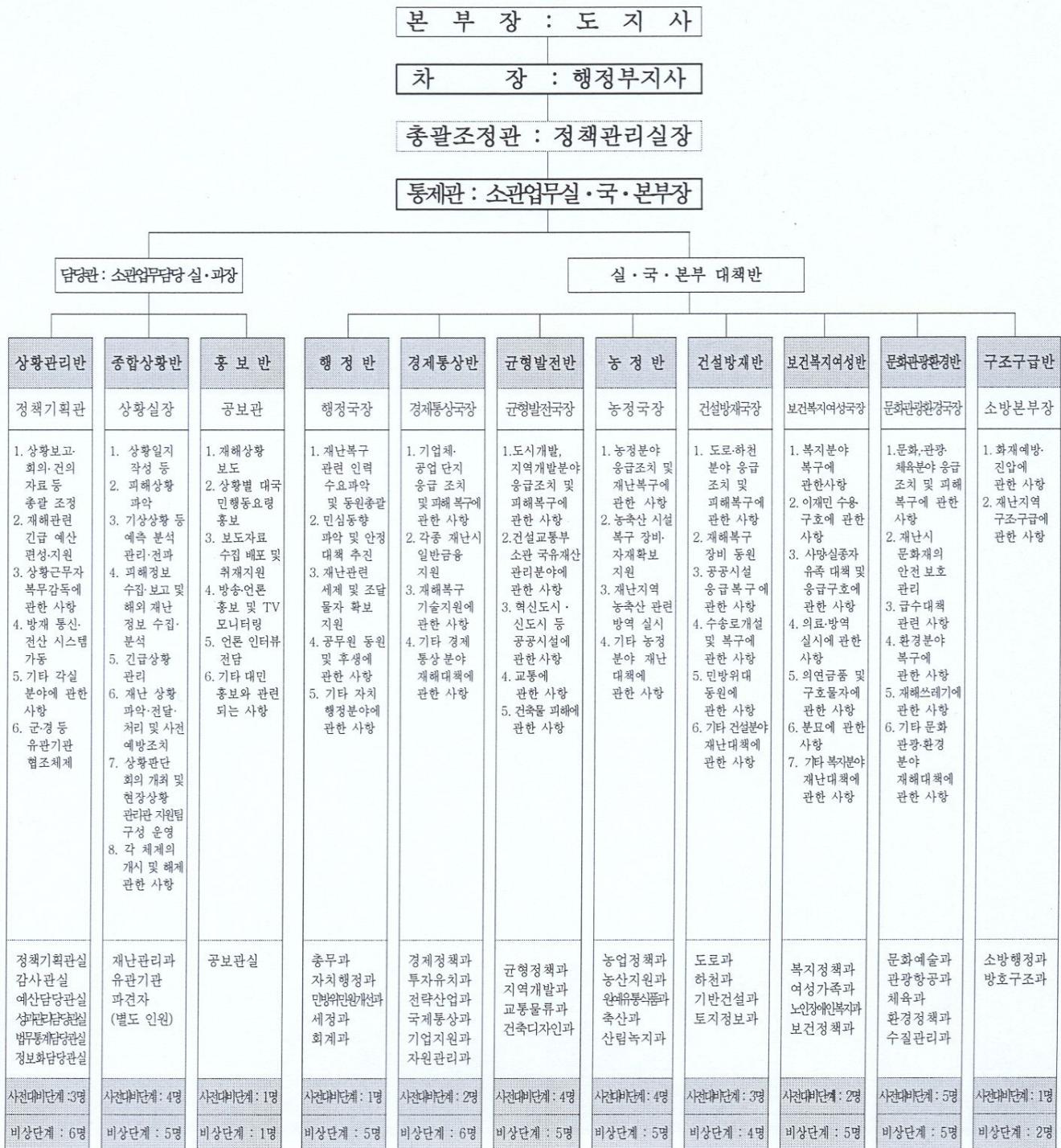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제4조제3항 관련)



<근무방법>

- 설·국·본부 주무 실·과장은 대책반장을 보좌한다.
- 근무반원 편성은 2개조로 편성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사전대비단계 30명, 비상단계 49명)
- 설·국·본부 근무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설·국·본부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일부 대책반을 소집하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유관기관 과견자는 종합상황반에 소속되어 상황실장 통제 하에 근무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u>도보</u> 및 <u>인터넷</u>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u>도보</u> 또는 <u>인터넷</u>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② (생 략)</p>	<p>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p> <p>① ~ ③ (생 략)</p> <p>④ 도지사는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u>재정경제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도지사는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u>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투자 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p> <p>2.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9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투자 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① 도지사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① 도지사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별지 제35호 서식의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보조 및 융자신청)</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보조지원신청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제9조(운행결손의 보조) 제 4조제 1항 제2호의 운행결손액 산정 및 지급 절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 6부터 제 41조의 9까지를 준용한다.</p>	<p>제6조(보조 및 융자신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보조지원신청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제9조(운행결손의 보조) 제 4조제 1항 제2호의 운행결손액 산정 및 지급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5조부터 제 48조까지를 준용한다.</p>

□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재난관리업무 담당국 본부장 및 소방본부장</u> 3. ~ 8. (생략) ② ~ ③ (생략)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재난관리업무 담당실·국장 및 소방본부장</u>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및 임무) ① (생 략)</p> <p>②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기반재 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실·국·본부장(소방본부장 포함)</u>이 되며, 차장 및 총괄조정관 을 보좌한다.</p> <p>4. 담당관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실·과·팀장</u>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한 통제관 을 보좌한다.</p> <p>③ (생 략)</p> <p>④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 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u>재난관리팀장</u>이 되며, 종 합상황실업무를 담당하고, 기반재 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u>기반보호총괄관</u>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 한다.</p>	<p>제4조(구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기반재 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실·국장(소방본부장 포함)</u>이 되며, 차장 및 총괄조정관을 보 좌 한다.</p> <p>4. 담당관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실·과장</u>이 되 며, 소관 업무에 대한 통제관 을 보좌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 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u>재난관리과장</u>이 되며, 종 합상황실업무를 담당하고, 기반재 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u>민방위·민원개선과장</u>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 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u>실·과·팀장</u>,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 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u>실·과장</u>,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u>행정자치부</u>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p>	<p>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u>행정안전부</u>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p>
<p>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 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u>행정자치부</u>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p> <p>3. ~ 5. (생 략)</p>	<p>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 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u>행정안전부</u>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p> <p>3.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p> <p>① (생 략)</p> <p>②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u>행정자치부</u>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및 관계중앙부처상황실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p>	<p>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u>행정안전부</u>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및 관계중앙부처상황실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p>
<p>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p> <p>제2조제 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u>행정자치부</u>·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u>행정자치부</u> 국가 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p> <p>제2조제 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u>행정안전부</u>·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u>행정안전부</u> 국가 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p>

□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여성정책과</u> 주무사무관이 된다.</p>	<p>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여성가족과</u> 주무사무관이 된다.</p>
<p>제3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u>여성정책과</u>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② (생 략)</p>	<p>제3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u>여성가족과</u>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 부위원장은 <u>사회복지과장</u>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관련 전 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생 략)</p>	<p>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u>보건복지여성국장</u>, 부위원장은 <u>노인장애인복지과장</u>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관련 전 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시설관리)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책임자는 <u>사회복지과장</u>이 된다. 단,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8조(시설관리)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책임자는 <u>노인장애인복지과장</u>이 된다. 단,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p>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간사와 서기)</p> <p>① (생 략)</p> <p>② 간사는 <u>보건위생과장</u>이 되고 서기는 <u>보건의약담당</u>이 된다.</p>	<p>제9조(간사와 서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는 <u>보건정책과장</u>이 되고 서기는 <u>보건정책팀장</u>이 된다.</p>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간사와 서기)</p> <p>① (생 략)</p> <p>② 간사는 <u>보건위생과장</u>으로 하고 서기는 <u>보건의약담당</u>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제10조(간사와 서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는 <u>보건정책과장</u>으로 하고 서기는 <u>건강증진팀장</u>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3.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 7. (생략)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생략)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관광환경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u>환경과</u>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관광환경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u>환경정책과</u>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생략) 2.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3. ~ 6. (생략)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3. ~ 6.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간사와 서기)</p> <p>① (생 략) ② 간사는 <u>환경과장</u>이 되고 서기는 <u>환경기획담당사무관</u>이 된다.</p> <p>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u>충청북도위원회 실비보상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간사와 서기)</p> <p>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u>환경정책과장</u>이 되고 서기는 <u>업무담당사무관</u>이 된다.</p> <p>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u>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 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 3. (생략) 4.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제 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 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2조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 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 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 2조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6. ~ 8. (생 략)</p> <p>9. "긴급자동차"라 함은 「<u>도로교통법</u>」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p> <p>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공무원 이하 단속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p> <p>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p> <p>1. ~ 3. (생 략)</p> <p>4. 「<u>대기환경보전법</u>」 제59조제2항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p>	<p>6. ~ 8. (현행과 같음)</p> <p>9. "긴급자동차"라 함은 「<u>도로교통법</u>」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p> <p>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공무원 이하 단속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p> <p>1. ~ 3. (생 략)</p> <p>4. 「<u>대기환경보전법</u>」 제94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p>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교육) ① (생 략)</p> <p>② 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1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5조(기관 평가) ① (생 략)</p> <p>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시장 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제15조(기관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시장 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 「하수도법」 제6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p>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기금설치)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장학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20조(기금설치)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장학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외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외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도지사는 제정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